

# 서울특별시립 마리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26
----------	-----

2012년 6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6월 12일
- 다. 상 정 일 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2년 6월 22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 가. 시립 마리공동체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 시설로서,
- 나.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여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다.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12.11 ~ 2015.10)
- 위탁업무
  - 서울특별시립 마리공동체 관리·운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한 아동을 위한 일정기간의 주거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소요예산 : 34,798천원 (2012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 (1) 동의안 제출 배경

- 시립 마리공동체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 시설로서, 위탁기간('09. 11. 1.~'12. 10. 31)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향후에도 민간위탁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2) 민간위탁 필요성 및 지속성에 대한 검토

-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가족 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정폭력 등으로 안정된 가정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런 여성들을 중심으로 사회 통합과 적응을 위한 실천적 개입을 모색하여 가정폭력 피해이주여성에 대한 자립을 돕고 한국 문화적응에 장기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시립 마리공동체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의 자립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으로서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것으로
  - 서울시에 이주여성이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의 폭력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마리공동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을 2009년 10월부터 서울에서 임대하여, 쉼터를 퇴소한 폭력피해여성과 동반아동이 함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정된 보호와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룹홈으로 운영하고 있음
  
- 민간위탁 추진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임.
  - 위탁업무는 서울특별시립 마리공동체 관리·운영,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한 아동을 위한 일정기간의 주거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임.
  
- 시립 마리공동체는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그룹홈)로서,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의 주거를 지원하여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입소대상은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에 입소해 있던 여성으로서 자활조건이 성숙하고 본인이 그룹홈 입소를 희망하는 자(2년까지 생활가능)로 하여,
  -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하여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재정부담 등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립 마리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826
----------	-----

제출년월일 : 2012년 6월 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시립 마리공동체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로서,
-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여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마리공동체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소재(비공개 대상 시설)
- 시설규모 : 건물 227m<sup>2</sup>(지상2~3층)
- 임대일자 : 2009. 11. 01
-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이용대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에 입소해 있던 여성

- 입소기간 : 1년(2년까지 연장 가능)

####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12.11 ~ 2015.10)
- 위탁업무
  - 서울특별시립 마리공동체 관리·운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한 아동을 위한 일정기간의 주거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소요예산 : 34,798천원 (2012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폭력피해 이주여성 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추진계획 (여성정책과-8372, 2012.5.31)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09.11.1 ~ 2012.10.31  
(3년,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市 직영시 근무연한 등 동일조건의 인력을 운영할 경우 인건비 부

분의 상당한 증가로 예산 낭비가 초래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사업비 부분의 상대적 감소로 서비스 질 하락이 예견되며,

-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위탁운영)
  -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운영)
  -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나. 기타사항

- 시립 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추진계획  
(여성정책과-8372, 2012.5.31)